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62

발의연월일: 2025. 2. 11.

발 의 자:김교흥·강득구·문진석

김윤덕 · 강선우 · 홍기원

천하람 • 정일영 • 이훈기

노종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와 고령, 질병 또는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의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 지원 강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는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급식에 관하여도 관리·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4조의6(급식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 층 등에게 필요한 급식을 제공(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식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급식을 제공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급식시설의 설치·운영·지원기준 등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재 정 안 제34조의6(급식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 필요한 급식 을 제공(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식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 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급 식을 제공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급식시설의 설치・운영・지 원기준 등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
	<u>다.</u>